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의료사고 분쟁 조정·중재 신청: 한국의료분쟁조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의료사고 분쟁 조정·중재 신청: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비용

루리

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며, 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에요. 수수료 금액은 중재원이 정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아요.

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며, 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에요. 수수료 금액은 중재원이 정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아요.

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(2025-06-21 시행본)과 같은 법 시행령(2026-08-18 시행본)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-10-28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개별 사건은 중재원 상담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 예시는 설명용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기본 정보

항목	내용
담당 기관	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신청 주체	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
신청 기한	의료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,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중 먼저 지나는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
처리 기간	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,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
수수료	중재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함. 금액은 공식 확인
상담	1670-2545(중재원 누리집 안내, 평일 09:00~18:00)

2 2.신청 순서

- 중재원에 상담하고 신청 서식과 서류를 확인해요.
-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요.
- 중재원이 피신청인(병원 등)에게 신청서를 보내요.
-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리면 절차가 시작돼요.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
각하돼요.
- 사실 조사와 감정을 거쳐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해요.
-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쪽이 동의 여부를 알려요.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
것으로 봐요.

3 3.상대방 동의 없이 시작되는 경우

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,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중재원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
개시해요. 이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이 개시일이예요. 피신청인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
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.

4 4. 조정이 성립하면

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, 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. 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요.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없어요.

5 5. 자주 하는 실수

- 이미 소송을 낸 사건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돼요.
-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. 기한은 10년과 3년 두 가지예요.
-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있어요. 중증 사고 예외인지 중재원에 확인하세요.
- 중재원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니, 비슷한 이름의 연락에 주의하세요.

6 6. 가상 예시

B씨는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다고 생각해요. B씨는 진료기록을 모으고 중재원에 상담한 뒤 조정신청서를 내요.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면 절차가 이어지고, 응하지 않으면 각하돼요.

7 체크리스트

- 의료행위 종료일과 피해를 안 날을 정리했다
-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
- 진료기록 등 자료를 모았다
- 수수료와 서류를 중재원에 확인했다
-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 자격 서류를 준비했다

8 용어 정리

- **조정**: 조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양쪽이 동의하면 성립하는 절차예요.
- **중재**: 법 제43조에 따른 별도 절차이고 판정에 효력이 있어요. 신청 방법은 **공식 확인**하세요.
- **각하**: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것이예요.
- **감정부**: 의료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는 조직이에요.

9 자주 묻는 질문

Q. 소송 없이 가능한가요?

A. 법 제40조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해요.

Q.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
A. 중재원이 정해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. 중재원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10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>)
- 같은 법 시행령: 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>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>)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: <https://www.k-medi.or.kr> (<https://www.k-medi.or.kr>)
- 보건복지부: <https://www.mohw.go.kr> (<https://www.mohw.go.kr>)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X

Facebook

다른 고민 보기 ·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1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